

1. 개정이유

경인지방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을 책임운영기관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이 아닌 통계청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경인지방통계청 인력 34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3명, 4·5급 2명, 5급 22명, 6급 59명, 7급 103명, 8급 112명, 9급 40명), 동북지방통계청 294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3명, 4·5급 2명, 5급 26명, 6급 52명, 7급 81명, 8급 103명, 9급 26명), 호남지방통계청 334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5급 3명, 5급 24명, 6급 69명, 7급 89명, 8급 115명, 9급 31명), 동남지방통계청 224명(3·4급 1명, 4·5급 2명, 5급 8명, 6급 36명, 7급 68명, 8급 86명, 9급 23명), 충청지방통계청 246명(3·4급 1명, 4·5급 1명, 5급 11명, 6급 43명, 7급 69명, 8급 90명, 9급 31명) 소속 기관 공무원 정원으로 재배정 하고,

개방형 직위의 합리적 운영과 행정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조사관리 국장 직위를 국장급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경인, 동북, 호남, 동남 및 충청지방통계청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며,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별표3의 정원 내 임기제 공무원 정원 중 홍보를 담당하는 정원 1인을 2인으로 조정하고, 소속기관 지방통계청 9급 정원 1명을 소속기관 통계교육원으로 이체하며,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1명(9급 1명)으로 조정하는 등 하부조직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일반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지방통계청”을 “지방통계관서”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지방통계청장)”을 “(지방통계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임기제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나등급”을 “나등급으로” 하고, 동남지방통계청장, 충청지방통계청장은 각각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방통계청에 조사지원과, 지역통계과, 경제조사과, 사회조사과 및 농어업조사과(경인지방통계청은 제외한다)를 두고, 경인지방통계청에 농어업서비스업조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보한다.

1. 조사지원과장 : 경인·동북 및 호남지방통계청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동남 및 충청지방통계청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2. 지역통계과장 : 경인·동북 및 호남지방통계청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동남지방통계청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충청지방통계청은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3. 경제조사과장 : 경인지방통계청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동북 및 호남지방통계청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동남 및 충청지방통계청은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4. 사회조사과장 : 경인·동북 및 호남지방통계청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동남지방통계청 및 충청지방통계청은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5. 농어업조사과장 : 호남지방통계청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동북·동남 및 충청지방통계청은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6. 농어업서비스업조사과장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7. 다만, 동북지방통계청 농어업조사과장, 동남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장, 충청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장 및 경제조사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체하여 운영하는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조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관인관리와 인사 등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회계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3.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조사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항
5. 관할 기구(통계도서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7. 지방청(사무소 포함)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 수행
8. 반부패 청렴 및 공직기강 확립 업무 수행
9. 현장조사 확인 점검 등 조사점검 업무 수행
10. 교차 감사 및 자체감사 인력지원
11. 그 밖에 홍보활동 및 지방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 하는 사항

④ 지역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 지역통계의 분석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
2. 관할 시군구 지역통계 작성의 승인 및 품질관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조사대행 및 지역통계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5. 관할 지역통계 수요조사 및 신규통계 발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통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⑤경제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통계관련조사의 실시

2. 경제통계관련조사표의 내용검사 및 분석

3. 경제통계관련조사표의 부호기입 및 내용입력

4. 경제통계관련조사의 표본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경제통계관련조사의 정확도 제고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계조사·분석 등에 관한 사항

⑥사회조사과장은 다음 각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통계관련조사의 실시

2. 사회통계관련조사표의 내용검사 및 분석

3. 사회통계관련조사표의 부호기입 및 내용입력

4. 사회통계관련조사의 표본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사회통계관련조사의 정확도 제고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계조사·분석 등에 관한 사항

⑦농어업조사과장은 다음 각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어업통계관련조사의 실시

2. 농어업통계관련조사표의 내용검사 및 분석

3. 농어업통계관련조사표의 부호기입 및 내용입력

4. 농어업통계관련조사의 표본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농어업통계관련조사의 정확도 제고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계조사·분석 등에 관한 사항

⑧농어업서비스업조사과장은 다음 각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어업·서비스업통계관련조사의 실시

2. 농어업·서비스업통계관련조사표의 내용검사 및 분석

3. 농어업·서비스업통계관련조사표의 부호기입 및 내용입력

4. 농어업·서비스업통계관련조사의 표본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서비스업통계관련조사의 정확도 제고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계조사·분석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의 제목 “(관할구역)”을 “(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강원지방통계지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강원지방통계지청에 지역통계과, 경제사회조사과, 농어업조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지역통계과장은 제7조3항 및 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④ 경제사회조사과장은 제7조5항 및 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농어업조사과장은 제7조7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소장은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사무소장·인천사무소장

· 수원사무소장 · 안동사무소장 · 목포사무소장 · 전주사무소장 · 제주사무소장 및 울산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체하여 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⑦ 소장은 지방통계청장(원주사무소장, 강릉사무소장 및 영월사무소장의 경우에는 강원지방통계청장을 말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 감독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명칭 등) 지방통계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고 지방통계청 및 사무소의 소속 · 명칭 ·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제2항 중 “1인”을 “2인”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통계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방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3과 같으며, 별표 5의3의 정원 중 1명(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1조의2를 제12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장급 2개 개방형직위”란 조사관리국장 및 통계개발원장을 말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8조 관련)”을 “(제9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9조제2항 관련)”을 “(제9조관련)”으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제11조 관련)”을 “(제11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총계 및 일반직 계 “32”를 각각 “33”으로 한다.

별표 4 행정서기·통계서기·전산서기·농업서기 또는 공업서기 5 다음에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농업서기보 또는 사서서기보 1”을 신설한다.

별표 4의2의 제목 중 “(제11조의2 관련)”을 “(제12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제10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1항 관련)”을 “(제11조의제2항 본문관련)”으로 하고, “1. 경인지방통계청”를 삭제하며, 총계 및 일반직 계 “342”를 각각 “1,439”로 한다.

별표 5 일반직 계 1,439 다음에 “고위공무원단 3”을 신설하고, 고위공무원단 3 다음에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를 신설하며,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다음에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8”를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8 다음에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0”를 신설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0 다음에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91”를 신설하고,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91 다음에 “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전산주사 또는 사서주사 259”를 신설하며, 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전산주사 또는 사서주사 259 다음에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410”를 신설하고,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410 다음에 “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전산서기 또는 사서서기 506”를 신설하며, 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전산서기 또는 사서서기 506 다음에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농업서기보 또는 사서서기보 119”를 신설하고,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농업서기보 또는 사서서기보 119 다음에 “운전서기보 7”를 신설하며, 운전서기보 7 다음에 “방호서기보 8”를 신설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청장) 1”를 삭제한다.

별표 5 “3급 또는 4급 이하 341”을 삭제하고, “2. 동북지방통계청”를 삭제하며, “총계 294”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294”를 삭제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청장) 1”를 삭제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293”를

삭제하며, “3. 호남지방통계청”를 삭제하고, “총계 334”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334”를 삭제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청장) 1”를 삭제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33”를 삭제하고, “4. 동남지방통계청”를 삭제한다.

별표 5 “총계 224”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224”를 삭제하며, “임기제 3·4급(청장) 1”를 삭제하고, “4급 또는 5급 이하 223”를 삭제하며, “5. 충청지방통계청”를 삭제하고, “총계 246”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246”를 삭제하고, “임기제 3·4급(청장) 1”를 삭제하며, 방호서기보 8 다음에 “사무운영서기보 16”를 신설하고, “4급 또는 5급 이하 245”를 삭제한다. 별표 5의3을 신설한다.

지방통계청 공무원 정원표(제11조의제2항 단서관련)

총계	1,440
일반직 계	1,440
고위공무원단	3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8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0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91
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전산주사 또는 사서주사	272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417
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전산서기 또는 사서서기	491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농업서기보 또는 사서서기보	115
운전서기보	7
방호서기보	8
사무운영서기보	1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전산주사 또는 사서주사 13명,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7명은 2024년 5월 24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5월 25일 이후에는 그 조정된 정원은 별표 1의2의 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전산서기 또는 사서서기 15명,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5명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통계서기보 1명은 2022년 12월 25일까지 존속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조사관리국) ① 조사관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u>일반직공무원</u> 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5조(조사관리국) ① ----- ----- <u>임</u> <u>기제공무원</u> ----- ----- --.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u>제4장 지방통계청</u>	<u>제4장 지방통계관서</u>
제7조(지방통계청장) ① 지방통계청장(동남지방통계청장 및 충청지방통계청장은 제외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u>임기제공무원</u> 으로 각각 보하되, 그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은 각각 <u>나등급</u> 으로 한다.	제7조(지방통계청) ① ----- ----- ----- ----- <u>일반직공</u> <u>무원</u> ----- ----- <u>나등</u> <u>급</u> 으로 하고, 동남지방통계청장, 충청지방통계청장은 각각 <u>3급 또는 4급</u> ---.
② 동남지방통계청장, 충청지방통계청장은 각각 <u>임기제공무원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u>	②지방통계청에 조사지원과, 지역통계과, 경제조사과, 사회조사과 및 농어업조사과(경인지방통계청은 제외한다)를 두고, 경인지방통계청에 <u>농어업서비스업조사과</u> 를 두되, 각 과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보한다. 1. <u>조사지원과장</u> : 경인·동북 및 호남지방통계청은 서기관 또

는 기술서기관으로, 동남 및 충청지방통계청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2. 지역통계과장 : 경인·동북 및 호남지방통계청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동남지방통계청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충청지방통계청은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3. 경제조사과장 : 경인지방통계청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동북 및 호남지방통계청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동남 및 충청지방통계청은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4. 사회조사과장 : 경인·동북 및 호남지방통계청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동

남지방통계청 및 충청지방통계청은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5. 농어업조사과장 : 호남지방통계청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동북·동남 및 충청지방통계청은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6. 농어업서비스업조사과장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7. 다만, 동북지방통계청 농어업조사과장, 동남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장, 충청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장 및 경제조사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체하여 운영하는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조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신 설>

<신 설>

분장한다.

1. 보안·관인관리와 인사 등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회계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3.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조사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항
5. 관할 기구(통계도서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7. 지방청(사무소 포함)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 수행
8. 반부패 청렴 및 공직기강 확립 업무 수행
9. 현장조사 확인 점검 등 조사 점검 업무 수행
10. 교차 감사 및 자체감사 인력 지원
11. 그 밖에 홍보활동 및 지방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 하는 사항

④ 지역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 지역통계의 분석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2. 관할 시군구 지역통계 작성
의 승인 및 품질관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조사대행 및 지역통계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 등과
의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5. 관할 지역통계 수요조사 및
신규통계 발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통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⑤경제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통계관련조사의 실시

2. 경제통계관련조사표의 내용
검사 및 분석

3. 경제통계관련조사표의 부호
기입 및 내용입력

4. 경제통계관련조사의 표본관
리 등에 관한 사항

5. 경제통계관련조사의 정확도
제고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계조사·분석 등에
관한 사항

⑥사회조사과장은 다음 각 사항
을 분장한다.

1. 사회통계관련조사의 실시

<신 설>

<신 설>

2. 사회통계관련조사표의 내용
검사 및 분석

3. 사회통계관련조사표의 부호
기입 및 내용입력

4. 사회통계관련조사의 표본관
리 등에 관한 사항

5. 사회통계관련조사의 정확도
제고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계조사·분석 등에
관한 사항

⑦농어업조사과장은 다음 각 사
항을 분장한다.

1. 농어업통계관련조사의 실시

2. 농어업통계관련조사표의 내
용검사 및 분석

3. 농어업통계관련조사표의 부
호기입 및 내용입력

4. 농어업통계관련조사의 표본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농어업통계관련조사의 정확
도 제고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계조사·분석 등에
관한 사항

⑧농어업서비스업조사과장은
다음 각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어업·서비스업통계관련조
사의 실시

제8조(관할구역) 지방통계청의 관
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신 설>

<신 설>

<신 설>

2. 농어업·서비스업통계관련조
사표의 내용검사 및 분석

3. 농어업·서비스업통계관련조
사표의 부호기입 및 내용입력

4. 농어업·서비스업통계관련조
사의 표본관리 등에 관한 사
항

5. 농어업·서비스업통계관련조
사의 정확도 제고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계조사·분석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

① 강원지방통계지청장은 서기
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
다.

② 강원지방통계지청에 지역통
계과, 경제사회조사과, 농어업
조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
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
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사
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지역통계과장은 제7조3항 및
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④ 경제사회조사과장은 제7조5
항 및 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
장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9조(지방통계청에 두는 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 ①지방통계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통계청장 소속하에 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를 둔다.
②지방통계청에 두는 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⑤ 농어업조사과장은 제7조7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소장은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사무소장·인천사무소장·수원사무소장·안동사무소장·목포사무소장·전주사무소장·제주사무소장 및 울산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 제3항에 따라 이체하여 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⑦ 소장은 지방통계청장(원주사무소장, 강릉사무소장 및 영월사무소장의 경우에는 강원지방통계지청장을 말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명칭 등) 지방통계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고 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의 소속·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

③ 지방통계지청장은 4급 공무원으로 보하고, 사무소장은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사무소장·인천사무소장·수원사무소장·안동사무소장·목포사무소장·전주사무소장·제주사무소장 및 울산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체하여 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④ 지방통계지청장 및 사무소장은 지방통계청장(원주사무소장, 강릉사무소장 및 영월사무소장의 경우에는 강원지방통계지청장을 말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통계청장은 별표 3의 통계청 공무원 정원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인)과 그 밖의 정원중 33인(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인, 행정사무

제10조(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2인-----

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9인, 행정주사·통계주사 또는 전산주사 15인,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인, 행정서기 또는 통계서기 3인}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1조(통계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생략)

<신설>

제11조의2 (생략)

제12조(지방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지방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

-----.

제1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지방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3과 같으며, 별표 5의3의 정원 중 1명(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12조 (현행 제11조의2와 같음)

<삭제>

다. 이 경우 4급 공무원 등의 정원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경인지방통계청: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

2. 동북지방통계청: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

3. 호남지방통계청: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명,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

4. 동남지방통계청: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

5. 충청지방통계청: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

② 삭 제

제13조(개방형직위에 관한 특례)
<신 설>

① · ② (생 략)

제13조(개방형직위에 관한 특례)

①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장급 2개 개방형 직위”란 조사관리국장 및 통계개발원장을 말한다.

② · 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표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통계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통계교육원 공무원 정원표	(제11조 관련)	(제11조 제1항 관련)	
총계	32	33	+1
일반직 계	32	33	+1
·	·	·	
·	·	·	
<u>행정서기보 · 통계서기보 · 공업</u> <u>서기보 · 농업서기보</u> 또는	<신 설>	1	+1
<u>사서서기보</u>			
·			
·	·	·	
·	·	·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의2]

통계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12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통계개발원 공무원 정원표	(제11조의 2 관련)	(제12조 관련)	
·	·	·	
·	·	·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지방통계청 공무원 정원표(제11조의 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지방통계청 공무원 정원표	(제10조의 2제1항 및 제12조제1 항 관련)	(제11조 의제2항 본문관 련)	
1. <u>경인지방통계청</u>	<u>1. 경인지 방통계청</u>	<u><삭 제></u>	-1. 경인 지방통계 청
총계	<u>342</u>	<u>1,439</u>	+1097
일반직 계	<u>342</u>	<u>1,439</u>	+1097
<u>고위공무원단</u>	<u><신 설></u>	<u>3</u>	+3
<u>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신 설></u>	<u>2</u>	+2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신 설></u>	<u>8</u>	+8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u>	<u><신 설></u>	<u>10</u>	+10
<u>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u>	<u><신 설></u>	<u>91</u>	+91
<u>행정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사 · 전산주사 또는 사서주사</u>	<u><신 설></u>	<u>259</u>	+259
<u>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공업주사보 · 농업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u>	<u><신 설></u>	<u>410</u>	+410
<u>행정서기 · 통계서기 · 공업서기 · 농업서기 · 전산서기 또는 사서서기</u>	<u><신 설></u>	<u>506</u>	+506
<u>행정서기보 · 통계서기보 · 공업서기보 · 농업서기보 또는 사서서기보</u>	<u><신 설></u>	<u>119</u>	+119

<u>운전서기보</u>	<u><신 설></u>	<u>7</u>	+7
<u>방호서기보</u>	<u><신 설></u>	<u>8</u>	+8
<u>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청장)</u>	<u>1</u>	<u><삭 제></u>	-1
<u>3급 또는 4급 이하</u>	<u>341</u>	<u><삭 제></u>	-341
<u>2. 동북지방통계청</u>	<u>2. 동북지 방통계청</u>	<u><삭 제></u>	-2. 동북 지방통계 청
<u>총계</u>	<u>294</u>	<u><삭 제></u>	-294
<u>일반직 계</u>	<u>294</u>	<u><삭 제></u>	-294
<u>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청장)</u>	<u>1</u>	<u><삭 제></u>	-1
<u>3급 또는 4급 이하</u>	<u>293</u>	<u><삭 제></u>	-293
<u>3. 호남지방통계청</u>	<u>3. 호남지 방통계청</u>	<u><삭 제></u>	-3. 호남 지방통계 청
<u>총계</u>	<u>334</u>	<u><삭 제></u>	-334
<u>일반직 계</u>	<u>334</u>	<u><삭 제></u>	-334
<u>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청장)</u>	<u>1</u>	<u><삭 제></u>	-1
<u>3급 또는 4급 이하</u>	<u>333</u>	<u><삭 제></u>	-333

<u>4. 동남지방통계청</u>	<u>4. 동남지 방통계청</u>	<u><삭 제></u>	-4. 동남 지방통계 청
<u>총계</u>	<u>224</u>	<u><삭 제></u>	-224
<u>일반직 계</u>	<u>224</u>	<u><삭 제></u>	-224
<u>임기제 3·4급(청장)</u>	<u>1</u>	<u><삭 제></u>	-1
<u>4급 또는 5급 이하</u>	<u>223</u>	<u><삭 제></u>	-223
<u>5. 충청지방통계청</u>	<u>5. 충청지 방통계청</u>	<u><삭 제></u>	-5. 충청 지방통계 청
<u>총계</u>	<u>246</u>	<u><삭 제></u>	-246
<u>일반직 계</u>	<u>246</u>	<u><삭 제></u>	-246
<u>임기제 3·4급(청장)</u>	<u>1</u>	<u><삭 제></u>	-1
<u>4급 또는 5급 이하</u>	<u>245</u>	<u><삭 제></u>	-245
<u>사무운영서기보</u>	<u><신 설></u>	<u>16</u>	+16